

■ 비료관리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신설 2021. 8. 10.>

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·방법(제10조제3항 관련)

1. 위해성검사의 기준

- 가.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(이하 "위해성검사기관"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위해성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의 함유량 또는 함유비율을 그 대상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른 위해성검사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검사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다. 나목 단서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검사로 측정한 검사결과를 위해성검사의 측정결과로 한다.
- 라. 위해성검사기관은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한 위해성검사의 결과 해당 비료와 그 원료가 별표 1에서 정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. 위해성검사의 방법

- 가. 위해성검사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위해성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비료와 그 원료의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비료와 그 원료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.
- 나. 위해성검사기관은 가목에 따라 비료와 그 원료의 시료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(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게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목적, 출입일시 등이 기재된 출입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.
- 다. 위해성검사기관은 가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화학적 검사, 미생물학적 검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라. 그 밖에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